

개방이사추천위원회운영규정

시행일 : 2013. 12. 23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사립학교법 제14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2 제4항, 학교법인경희학원정관(이하 “정관”이라 한다) 제20조의 2내지 제20조의 5에 의거하여 개방이사추천위원회(이하 “추천위원회”라 한다)의 기능·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정의) 본 규정에서 “개방임원”이라 함은 학교법인으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의뢰 받은 개방이사 및 개방감사를 말한다.

제3조(기능) 추천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법인으로부터 요청받은 개방이사 대상인원의 2배수 추천
2. 법인으로부터 요청받은 개방감사 대상인원의 단수 추천

제4조(구성) ① 추천위원회는 5명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.

1. 법인 위원 : 2명
 2. 대학평의원회 위원 : 2명
 3. 병설 초·중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: 1명
- ②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하며, 추천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한다.

제5조(개방임원 후보자의 자격) 개방임원 후보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진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
2. 사립학교법 제21조, 제22조, 제23조에 저촉되지 않는 자

제6조(개방임원의 추천절차) ① 법인은 개방임원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(재직임원의 경우 임기만료 3월전)에 추천위원회에 개방임원 선임 대상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.

② 법인으로부터 개방임원 추천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개방이사의 경우는 대상인원의 2배수를, 개방감사의 경우는 단수를 선정하여 법인에 이를 추천하여야 한다.

제7조(개방임원 후보자 추천) ① 개방임원 후보자는 별표1의 양식에 의거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추천위원회에 추천하여야 한다.

② 각 위원은 추천위원회에 개방이사후보 2인 이하, 개방감사후보 1인을 추천할 수 있다.

③ 2명 이상의 개방이사가 결원 시에는 따로 구분하여 추천한다.

제8조(개방임원 후보자 선정 및 추천) ① 추천위원회는 제7조에 의하여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협의하여 개방임원 후보자를 선정한다.

② 제1항에서 선정된 개방임원 후보자를 제6조 제2항에 따라 개방임원으로 추천할 때에는 별표2의 양식에 의거 추천위원회위원장이 법인에 추천한다.

제9조(회의소집) 추천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법인으로부터 개방임원 선임 대상자 추천·요청을 받은 경우 소집한다.

제10조(의사 및 의결정족수)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·의결한다.

제11조(회의록) 추천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이 간서명하고, 그 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.

제12조(비밀유지) ① 추천위원회 위원은 회의를 통하여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.
② 추천위원회를 통하여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 법인 및 학교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처벌할 수 있다.

제13조(규정 개정) 이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4조(사무처리) 추천위원회의 사무처리는 대학평의원회에서 관장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2008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2013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2013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 개방임원 후보자 추천서

개방임원 후보자 추천서

성명 :
주민등록번호 :
주소 :

상기인을 개방이사추천위원회운영규정 제7조에 의한 개방임원(이사, 감사) 후보자로 추천합니다.

1. 추천사유 : 000이사 후임(00.00.00 임기만료)
2. 첨부자료
 - 이력서 1부(사진 부착)
 - 개방임원 후보자 추천 승낙서 1부(별첨양식)
 - 추천하는 위원의 각서 1부 (별첨양식)
 - 교육경력증명서 (교육경험이사의 경우)

년 월 일

개방이사추천위원 _____ (서명/날인)

개방이사추천위원회 귀중

(별첨 양식) 개방임원 후보자 추천 승낙서

개방임원 후보자 추천 승낙서

성명 :

주민등록번호 :

주소 :

상기 본인은 학교법인 경희학원 개방임원(이사, 감사)후보자로 추천됨을 승낙합니다.

년 월 일

_____ (서명/날인)

개방이사추천위원회 귀중

(별첨 양식) 각서

각서

다음 사람이 학교법인 경희학원의 개방임원(이사,감사) 후보로 추천됨에 있어 사립학교법 제21조(임원선임의 제한), 제22조(임원의 결격사유) 및 제23조(임원의 겸직금지)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이에 각서합니다.

구분	성명	생년월일	주소
개방(이사,감사)			
개방(이사,감사)			

년 월 일

개방이사추천위원 _____ (서명/날인)

개방이사추천위원회 귀중

[별표 1] 개방임원 추천서

개방임원 추천서

성명 :

주민등록번호 :

주소 :

상기 인을 학교법인경희학원정관 제20조의4 및 개방이사추천위원회운영규정 제6조에 의한 개방임원(이사, 감사)으로 추천합니다.

1. 추천사유 : 000이사 후임(00.00.00 임기만료)

2. 첨부자료

- 이력서 1부(사진 부착)
- 교육경력증명서 (교육경험이사의 경우)
-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최종 회의록 사본 1부.

년 월 일

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장

학교법인 경희학원 귀중